**조양구 발전과개혁위원회의**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신고 장려에**

**관한 통지**

조양구 <기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전염병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조치>(조정판발[2020]2호)와 조양구 <북경시인민정부판공청의 중소기업이 전염병 영향에 따른 대응을 진일보 지원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조정판발[2020]8호)를 관철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상업용 빌딩이 전염병 유행 기간 조양구에 임차하여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장려하고, 전염병 유행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줄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이에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신고 장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주체는 법에 의거 조양구에서 시장감독관리, 통계, 세무(관할을 벗어난 세원등기 불포함)등기를 진행한 빌딩 운영기업이다.

**2. 지원기준**

2월부터 4월 동안, 조양구에 임차하여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구(區) 발전개혁위의 인정을 거쳐 임대료총액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에 장려한다. 단일 빌딩 최고 장려금액은 1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마다 최고 장려금액은 2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추산기수는 최종 임차기업이 감면받은 임대료 합계이며, 또한 기존 계약서(즉,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기존 임대차계약 보충계약서 등) 및 감면서류(즉, 임대료 감면에 관한 쌍방 협의서 등)에 명시된 사무장소 임대료 금액에 근거하여 장려금액을 산정하고,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가 임차기업에게 제공한 전용 주차공간, 식당, 물업(관리사무소) 등의 비용과 세금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3. 신고조건**

신고하는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신고단위)와 임차인은 조양구에서 합법적이고 성실하게 경영하며, 올해 납세불량기록과 중대한 위법위규 행위가 없으며, 조양구 관련 발전계획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1 신고하는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신고단위)는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3.1.1 빌딩 건축 면적은 1,000㎡(포함) 이상이다.

3.1.2 지원대상은 실제 임대료를 수취하는 단위이며, 2020년 2월부터 4월 동안 임차한 중소기업에게 임대료 감면 조치를 취하였고, 5월 15일 전까지 감면을 종료한다.

3.1.3 항목에 해당하는 빌딩은 합법적인 재산권 증명 문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건설되지 않았다.

3.1.4 보유한 상업용 빌딩은 개인용도가 아니며, 쇼핑몰, 호텔,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3.1.5 정부 부처와 관할 지역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빌딩 방역 업무를 전개한다.

3.2 임차기업은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법에 의거 조양구에서 시장감독관리, 통계, 세무(관할을 벗어난 세원등기 불포함)등기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근무(집중사무구역 내 기업은 불포함)한다. 중소기업은 반드시 공업과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유형구분 기준규정>(공신부연기업[2011]300호)에 부합해야 한다.

**4. 신고요구**

4.1 각 항목 신고단위는 신고서류의 진실, 정확, 합법, 유효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4.2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서류를 제공한 항목 신고단위에 대해서는 그 당해연도 신고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기업 ‘블랙리스트’ 관리에 올려 더 이상 정부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4.3 동일 주소지의 동일 기업 또는 동일한 임차구역이 조양구 <기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전염병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조치> 중 임대료 지원조항에 해당할 경우, 정책지원을 중복으로 향유할 수 없다.

**5. 신고절차**

5.1 신고기업은 서류준비요구에 따라 우선 전자판을cyjmzj@163.com으로 제출하고, 5 업무일 내 서류 예비심사를 마친 후, 구(區) 발전개혁위는 기업에 서면 서류를 제출하도록 유선으로 통지한다.

5.2 구(區) 발전개혁위는 제3자 심사기구에 기업 신고자료에 대한 평가를 위탁함과 동시에 관할지역과 기능 구(區) 관리위원회에 기업의 신고상황과 방역업무 전개상황을 조사하도록 한다.

5.3 제3자 심사기구는 서류를 취합한 후, 신고항목의 자금지원 초안을 작성하고, 구(區) 발전개혁위는 심사기구가 작성한 초안을 참조하여 전국 구(區)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장려 방안을 총괄 제정하고, 구(區) 정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한다.

**6. 신고 시 필요서류**

신고서류는 전자판 신고서류, 서면 신고서류를 포함하며, 신고서류에 대한 작성요구는 다음과 같다.

6.1 서면 신고서류

서면 서류: <조양구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장려 신고서> (첨부1)

제작요구: 엄격히 신고서 요구와 배열순서에 맞춰 A4용지 제본, 표지, 장정본을 통일적으로 채택하고, 공장과 간인장을 날인한다. 1식 1부이다.

6.2 전자판 신고서류

전자판 신고자료: <조양구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장려하는 신고서> Word 및 PDF양식 각 1부씩, 내용 및 데이터는 서면 신고서와 일치시키고, 만약 다를 경우에는 서면 <신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작요구: 문서 양식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판 문서명은 신고단위명칭 + 상업용 빌딩 명칭 신고서로 생성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신고자료 제출기한 및 주소**

신고기한: 5월 11일 ~ 5월 29일 (공휴일 제외)

신고주소: 조양구 백자완서리 303동 13층 1310

연락처: (010)65090642, (010)65090643

조양구 발전개혁위

2020년 5월 6일

첨부: 1. 조양구 상업용 빌딩 운영단위 임대료 감면 정책 장려 신고서

 2. <중소기업 유형구분 기준규정>(공신부연기업[2011]300호)